

## 교육혁신위원회 규정

제정 2017. 8. 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 제도 개선 및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8., 2020. 3. 16.)

**제2조 (구성)** 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8. 1., 2019.10.28., 2020. 3. 16.)

1. 위원장은 정책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혁신처장으로 한다.
2. 기획처장, 교무처장, 단과대학장, 인재개발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한다.
4.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팀장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심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19.10.28., 2020. 3. 16.)

1. 위원회 운영의 기본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제규정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 3. 16.>
4. 교육혁신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개발·개편 정책에 관한 사항
6. 교육 성과·질 관리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제4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학기당 1회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 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6.)

**제7조 삭제<2020. 3. 16.>**

**부 칙(2017. 8. 28)**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

**제1조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조직개편에 따라 ‘벤처창업교육원’을 ‘교육혁신처’로 한다.

**부 칙(2019.10.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